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웰니스데이케어

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첨부1. 서식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비용부담의 방법: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1일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사.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타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8)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아.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자.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1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기요양급여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 : 일상생활 계획표를 작성, 지도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보고 한다.
(2) 건강관리 :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바이탈 체크와 혈당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위생관리 : 세안, 양치, 목욕서비스 등
(4) 식사제공 : 점심, 저녁, 간식서비스의 제공
(5) 상담서비스 : 수급자별 상담을 통하여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생활지도에 활용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활용한다.

(6) 가족상담 : 가족의 고충상담,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 상담 지원 및 교육

(7) 여가활동지원 : 수급자의 여가활동 활용을 위해 수급자 욕구에 부합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운영한다.

(8) 지역연계 : 지역사회의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총괄)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2) 간호 및 처치

활력징후 관찰 및 측정, 투약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의사진료보조 등

(3) 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 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4) 기타서비스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도움, 언어치료

다.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 수급자별 상담을 통하여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생활 지도에 활용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활용한다.

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보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관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 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 재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제14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 또는 급여제공인력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및 시설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

제15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괸한 사항)

가. 수급자는 센터의 방화관리 책임자 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요양보호사의 안내에 따라 실내에서의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한다.

다. 수급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개인용 전기제품 및 기타 물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식당이외의 장소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

라. 수급자는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에서는 금연 · 금주한다.

마. 수급자는 센터의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상해의 위험이 있는 물품 · 수리가 요구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알린다.

바. 수급자는 도난 · 분실 · 파손의 우려가 있는 개인 보관용 현금, 고가의 물품은 소지할 수 없다.

사. 수급자는 시설내 제한구역은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